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수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자원보호와 어획분쟁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살오징어 포획 금지 구역을 정하는 한편,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인용조문에 「수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법령 운용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른 「수산업법」 일부개정 시 조문변경 사항을 시행령 상 인용조문에 반영

나. 근해자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 등 정비(안 제45조의3, 별표 3의3)

기준에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이 급증함에 따라, 오징어 관련 분쟁해소와 자원보호를 위해 어구사용의 금지 구역 및 금지기간 신설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86조, 별표 6)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합리화

*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규정에 대해 적정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18.7, VIP)에 따라, 수산업법 포함 총 34개 법률에 대한 과태료 기준 법률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8. ~ 8.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제9조제4항에 따른 서해안”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7조제4항제3호”를 “법 제47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7조제6항”을 “법 제47조제8항”으로 한다.

제86조 중 “법 제102조제1항”을 “법 제102조제4항 ”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1호제1호라목의 멸치포획금지란 다음에 살오징어포획금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1. 근해 어업	라. 근해자망어업	살오징어포획 금지	연중	동경 128도 30분 이동의 해역.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동경 129도 이동의 해역으로 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1호	60	90	120
나.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60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80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		
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어업을 시작	법 제102조제1항제1호	150	250	500

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1호	30	50	70
라. 어업권자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 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 한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1호	30	50	70
마. 어업권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규약에 따르지 않고 어 업권을 특정인으로 하 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 와 그 특정인이 어업권 을 행사한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3호	60	90	120
바. 법 제38조제2항에 따 른 어장관리규약의 변 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 한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4호	60	90	120
사. 법 제39조에 따른 어 업권의 행사의 제한이 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와 어업권자가 그 위반 행위를 도운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5호	60	90	120
아.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 를 허용하지 않거나 입 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 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6호	60	90	120
자. 법 제44조제2항에 따 라 승계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를 않거 나 90일 이내에 어업허	법 제102조제1항제2호	250	350	500

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7호	60	90	120
카. 신고어업자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8호	60	90	120
타. 법 제48조제1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02조제2항제9호			
1)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70	100	150
2)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경우		60	90	120
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02조제3항제2호			
1)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50	70	100

2)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경우		30	50	70
하. 법 제48조제3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제1항제3호			
1)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200		
2)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경우		150		
거. 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경우 또는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3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0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		

너.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102조제1항제4호	150	250	500
더. 법 제6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4호	50	70	100
러.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어장·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5호	50	70	100
머.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10호	70	100	150
버.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11호	70	100	150
서.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6호	50	70	100
어.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02조제3항제7호	30	50	7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 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 라. (생 략)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 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제9조제4항에 따른 서해 안만 해당된다)	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 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 남도의 목포시·영광군· 함평군·무안군·신안군- --
② (생 략) 제29조(신고어업) ① (생 략) ②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2조제3 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어업)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47조제4항 ----- ----- ----- ----- -----

말한다. ③ <u>법 제47조제4항제3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u>법 제62조</u>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47조제6항</u>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102조제1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③ <u>법 제47조제6항제3호</u>----- ----- ----- ----- -----. ④ ----- <u>법 제47조제8항</u>----- ----- ----- -----.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102조제4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7